

'아동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제안서' 출간 기념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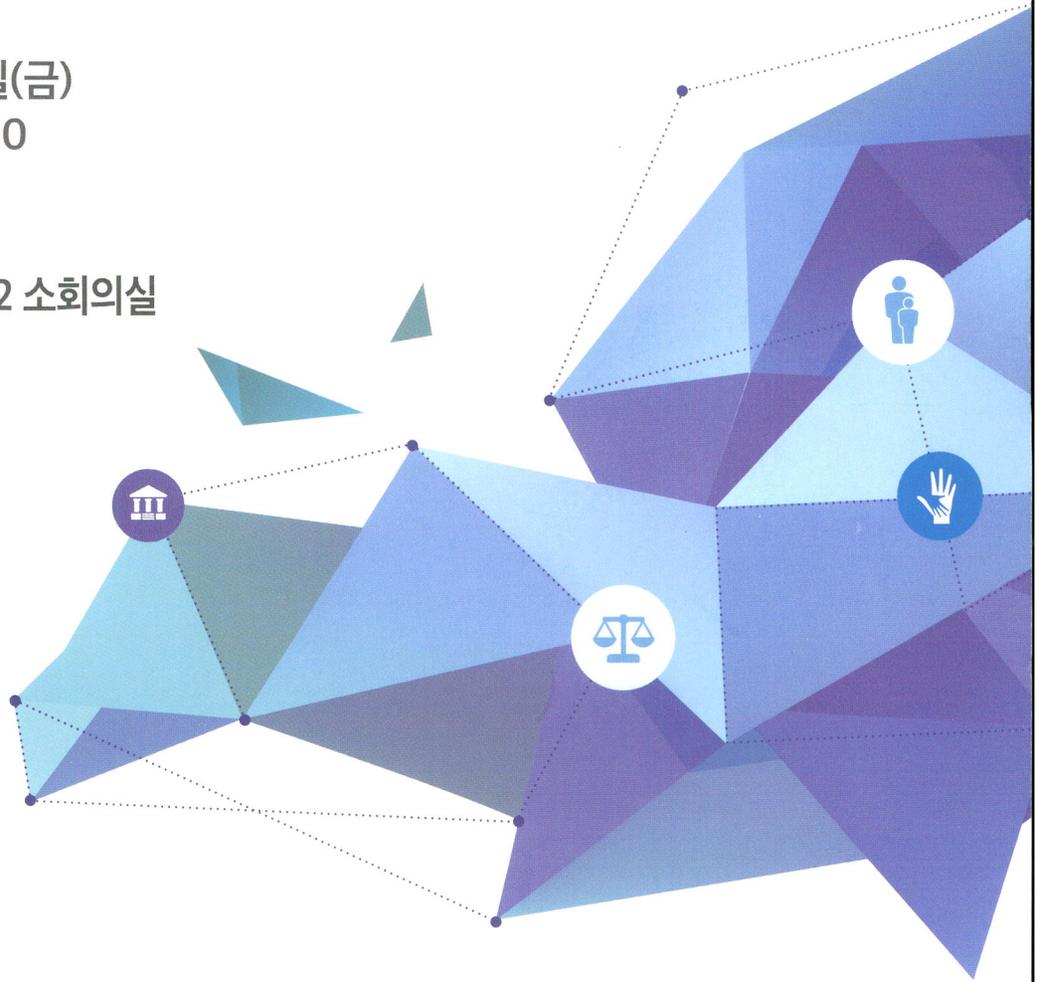
일시

2018년 12월 7일(금)

오전 9:30~12: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



공동주최

unicef
KOREA



국회의원 금태섭

프로그램

시간	내용(발표자)	
09:30 ~ 10:00 (30')	등록	사전접수 및 현장등록
10:00 ~ 10:05 (5')	환영사	개회 환영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송상현 회장 국회의원 금태섭
10:05 ~ 10:10 (5')	축사	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의원 김세연
10:10 ~ 10:15 (5')	경과보고	'아동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제안서' 추진경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종은 국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국)
10:15 ~ 10:30 (15')	기조연설	'유니세프 아동친화 소년사법 제안서' 발간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종호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전 유니세프아동친화사법 자문단장)
10:30 ~ 11:00 (30')	주제발표	아동권리적 관점에서 사법구조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동석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동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이행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관표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00 ~ 11:45 (45')	토론	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혜욱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승현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국선보조인) 이유정 기자 (중앙일보 탐사기획팀) 이법호 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 예방팀)
11:45 ~ 12:00 (15')	질의응답	전체 질의응답

인사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
송상현

안녕하세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송상현입니다.

헌법을 개정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아동친화적인 사법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만들게 되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으로서 매우 뜻 깊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 아동친화소년사법 제안서를 위해 바쁜 시간을 내어 이행과제를 발굴해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까지 친히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신 유니세프아동친화사법 자문단 자문위원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또 아동의 권리가 존중 받는 소년사법 환경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고 계시고, 이번 심포지엄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신 금태섭 위원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자 유니세프국회친구들의 의장으로 아동들의 권리신장 활동에 늘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김세연 의원께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동친화 소년사법은 1989년 유엔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입니다. 한국 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국내의 법과 정책을 정비할 책무가 있습니다. 협약을 비준한 이후 한국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아동친화적인 소년사법 체계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또 위원회는 소년사법 전문가들이 먼저 아동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아동권리교육을 받아야 함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동친화적인 소년사법은 아직 갈 길이 멍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법체계 내에서 범죄소년을 보호하면 안된다고 말합니다. 또 최근 여러 소년범죄로 인해 소년법을 강화하자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 내에 소년사법을 전담할 전문가 또한 부족한 현실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관련된 모든 법률과 사법절차에서 아동 최우선의 이익 원칙이 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사법절차 내에서 아동은 존엄과 가치를 지닌 하나의 인격체로 여겨져야 하며, 사법절차 안에서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으며 동등하게 존중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아동은 신체적 및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발달정도를 고려한 처우가 이뤄져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아동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어른과 다른 아동의 발달상태와 특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동은 배우고 경험하며 스스로 성장해가는 존재이므로, 긍정적인 변화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년사법 내 모든 관련자들은 부정적인 환경을 경험하고 범죄를 저지른 아동이라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존중 받는 사법환경과 적절한 처우를 경험하며, 그들이 다시 가정과 학교,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이러한 이유로 ‘유니세프 아동친화사법 자문단’과 함께 ‘아동친화 소년사법 제안서’를 발간하고,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오늘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께서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소년사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아동에게 친화적인 사법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12.7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 송 상 현